

1. 개정이유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조기 전환시 산재예방요율 적용 혜택을 부여하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8호의2서식)

산재예방요율의 적용을 위한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 서식의 예방 활동분야에 유급휴일 전환을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3. 23. ~ 5.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형태 []법인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유선)		FAX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업종)		업종코드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만 적습니다)		
사용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동전화)
	주소		
예방활동분야	[] 위험성평가	[] 사업주 교육	[] 근로시간 단축 [] 유급휴일 전환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성립일
	원사업주의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자인 경우만 기재)		

우리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장 귀하

첨부서류	상시근로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위험성평가”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한 경우 “사업주교육”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3. 1주간 근로시간을 52도 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실시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는 경우 “유급휴일 전환”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